

시내버스(6642, 6643, 6645) 변경·통합 노선 재조정에 관한 청원 -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- 청 원 자 :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6나길 110 부영아파트 임운빈 외 903명
- 소개의원 : 황준환 의원(자유한국당, 강서구 제3선거구, 교통위원회)
- 접수일자 : 2017. 8. 25.
- 회부일자 : 2017. 8. 28.

2. 청원요지

- 2017년 8월 5일부로 부영 아파트 주변을 운행하던 시내버스 6642번이 6645번과 통합되어 노선이 변경되었고 정문앞으로 운행되던 6643번은 6642번과 통합되어 단지앞 정류장이 폐쇄된바, 입주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함
- 해당 정류장은 인근 타 정류장에 비하여 일평균 승하차 횟수가 인근 정류장 보다 상당히 많아 주민들의 교통편의 저해소지가 상당하여 이에 주민들의 민원등을 고려하여 변경전 기존 시내버스 노선(6642,6643,6645)으로 복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

3. 소개의원 요지

- 2017년 8월 5일부로 부영 아파트 주변을 운행하던 시내버스 6642번이 6645번과 통합되어 노선이 변경되었고, 정문 앞으로 운행되던 6643번은 6642번과 통합되어 단지 앞 정류장이 폐쇄된 바, 입주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함
- 해당 정류장은 인근 타 정류장에 비하여 일평균 승하차 횟수가 인근 정류장 보다 상당히 많아 주민들의 교통편의 저해 소지가 상당하고, 특히 버스를 이용하여 당 아파트에서 강서구 내 단일학군인 명덕고, 세현고 등으로 통학하는 학생들과 당 아파트와 인접한 등촌고로 통학하는 주변지역 학생들의 불편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
- 당초, 버스노선 조정의 주된 원인인 노상배차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등의 소음 및 교통혼잡 민원은 당 아파트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이며, 특히 교통혼잡 민원은 불법주정차 등에 원인이 있는 바, 버스 노선 조정이 아닌 계도 및 단속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
- 이에 금번 시내버스 노선의 변경·통합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해당 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변경 전 기존 시내버스 노선(6642, 6643, 6645)으로 복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-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) : 노선환원 불가

- 해당 노선 조정은 종전 노선의 노상배차로 인한 상습민원발생, 불합리한 노선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선조정된 사항으로
- 등촌부영아파트 구간 운행시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
 - 도로 양측에 상습주정차로 인한 교행불가, 중앙선 침범 불법운행, 저상버스 투입불가
 - 교통사고문제, 운전원 휴게시간 ▪ 공간 미확보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) 등
- 이에 해당구간 운행시 문제점 비교검토하여 부득이 조정된 노선으로 조정후 이용객증가, 행정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선 환원은 어려움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청원은 강서구 부영아파트 주변을 운행하던 시내버스(6642, 6643, 6645번)의 노선 변경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근 및 통학이 불편해 집에 따라 변경 전 시내버스 노선으로 원상복구해 줄 것을 바라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지난 8월 5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노상배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(6642, 6643, 6645번) 노선조정을 시행한 바 있으나,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함에 있어 관련 자치구와 버스업체는 물론 노선 변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
- 동 청원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종전 노선의 노상배차로 인한 도로 양측의 불법주정차 및 중앙선 침범 운행 등의 상습민원 발생, 불합리한 노선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관련 민원을 해결했을 수 있으나, 결국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충분한 의견수렴과 그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이뤄진 합리적인 노선 변경이라고 보기에 다소 부족하다 할 것임

- 기존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던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여 1개 노선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로 환승을 유도하거나 400m 이상 떨어진 버스정류소로 도보이동 하도록 하는 것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, 서울시는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- 따라서, 아파트 단지 입구 버스정류소에서 이용하던 버스 노선들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 하고 환승 또는 400m 이상 떨어진 버스정류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부영아파트 입주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